

크레텍책임(주)/크레텍
대구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공급 및 S/W 개발
계 약 서

2022. 5. 30.

"발주자(甲)" 크레텍책임 주식회사

"시공자(乙)"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계 약 서

1. 계약명 : 크레텍 대구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 설비공급 및 S/W 개발
 2. 납품장소: 크레텍 대구스마트물류센터 內
 3. 공사기간: 2022.05.30. ~ 2024.05.30.
 4. 계약금액(공사금액): ₩ 22,200,000,000(一金이백이십이억원整) 「VAT 별도」
 5. 대금지불조건
 - 5.1 선급금: 계약금액의 20%(일금사십사억사천만원정), 계약 후 40 일내 지급.
단, 은행대출 승인 완료 후 지급조건으로 한다.
 - 5.2 중도금 1 차: 계약금액의 35%(일금칠십칠억칠천만원정), S/C(Stacker Crane)입고 후 30 일내 지급
 - 5.2 중도금 2 차: 계약금액의 35%(일금칠십칠억칠천만원정), 기계설비 설치 완료 후 30 일내 지급
 - 5.3 잔 금: 계약금액의 10 %(일금이십이억이천만원정), 시운전 성공 및 S/W 검수 완료 후 30 일내 지급
 6. 계약이행 보증금: 총계약금액의 10%(일금이십사억사천이백만원정) (보증보험 제출)
 7. 하자보수 보증금: 총계약금액의 10%(일금이십사억사천이백만원정) (보증보험 제출)
 8. 하자보증기간: 공사 준공일로부터 2 년 (S/W 무상유지보수 포함)
 9. 지체 상금율: 근무일 기준 지체일수 1 일당 계약금액의 일천분의 일「(1/1,000)/日」
(최대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일금이십이억이천만원정)를 상한으로 함)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약정서, 계약내역서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 상의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약속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약정서 1부

별첨 2. 계약내역서 1부

별첨 3. 자동화설비 설비공급 및 S/W 개발 공사 수행 계획서 1부

별첨 4. 대구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사양 및 Capa 1부

2022년 5월 30일

발주자(甲)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00

크레텍책임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수, 최 성 문



시공자(乙)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9 길 25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김 영 민



[별첨 1]

약 정 서

제 1 조 「총 칙」

크레텍책임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이하 "을"이라 칭함)는 『크레텍 대구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 설비공급 및 S/W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1 "납품"이란 설비사양서에 기술된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공 및 종합 성능검사 및 S/W 개발 관련 라이선스, 개발 산출물, 메뉴얼까지를 의미한다.
- 2.2 "종합성능검사"란 기구/제어설비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사항의 성능검사를 말한다.
- 2.3 "준공"이란 모든 기기의 납품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되어 종합 성능검사를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 2.4 "S/W 개발"이란 WMS, WCS, SMS, DPS 등 대구스마트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전반을 의미한다.

제 3 조 「계약 문서」

- 3.1 계약문서는 계약서, 약정서, 계약내역서로 구성된다.
- 3.2 제안서 및 설계 도면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모순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4 조 「사업수행계획서, 제작사양서 및 도면의 제출」

- 4.1 "갑"과 "을"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시공하게 될 본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을"은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2 사업수행계획서는 현장직원조직도, 직원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공사예정공정표(CPM)로 구성한다. 단, "갑"이 이에 대한 보완을 별도로 요청할 경우 "을"은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3 "갑"은 "을"이 제출한 제작사양서 및 도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및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을"에게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4.4 "갑"과 "을"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도면 및 제작사양서에 의하여 "을"이

시공할 본 공사는 "을"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사용 재료」

계약 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 및 구입사양서에 정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국산인 경우 KS 규격, 외산인 경우 JIS 또는 DIN 규격에 각 합격 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품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

- 6.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을"의 계약물품의 제작과정과 계약 이행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6.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를 "갑"이 지정하는 전문 검정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6.3 "을"은 제작 중간검사 계획을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갑"에게 중간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6.4 "갑"은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중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의 일부분으로 보관한다.

제 7 조 「기술지도」

- 7.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의 공사현장에 반입한 때부터 시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관리자(현장소장=현장대리인) 1인 이상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 성능검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기술지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 7.2 "을"은 종합 성능시험기간 중 "갑"의 운전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운전지침서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 제공한다.

제 8 조 「납품 및 검수」

- 8.1 "을"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출한 공사진행일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갑"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 8.2 "갑"은 검수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S/W 개발 검수는 14일 이내)에 검수일을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갑"의 참관 하에

검수일에 사전 합의한 검사계획 및 검수규정에 따라 외관검사 및 종합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3 "을"은 계약물품이 제 2 항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다시 제작한 후 외관검사 및 종합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합성능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8.4 계약물품이 외관검사 및 종합성능검사에 합격하여 "갑"이 계약물품을 인수한 경우에 "을"의 납품이 완료된다.

8.5 "을"은 계약물품의 납품검수를 받거나 최종납품을 하는 경우 다음문서를 "갑"의 검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하는 물품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품 및 검수의뢰서
- 2) 물품 반입증명서
- 3) 조립 및 설치기록
- 4) 최종 완성도면
- 5) 보존 및 사용에 관한 취급설명서
- 6) 기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

8.6 S/W 개발 검수 요청 시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쇄물, 파일제공)

- 1) 서버(소프트웨어) 설치 및 세팅 매뉴얼
- 2) 개발자 지침서
- 3) 테이블 목록/ERD/CRUD 매트릭스
- 4) 프로그램 목록/사양서
- 5)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6) 프로세스 흐름도(AS-IS, TO-BE)
- 7) 면담 및 회의록

제 9 조 「종합 성능검사 및 법정 안전검사」

9.1 종합 성능검사는 "을"이 성능검사요령서를 제출하여 "갑"이 검토, 승인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9.2 "을"은 계약물품의 설치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성능검사 개시일로부터 준공기일 내에 종합 성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3 종합 성능검사는 모든 기기의 단위성능 및 전체 SYSTEM 의 능력검사를 단위기간 동안 연속해서 실제 TEST 를 하여 기술사양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성능검사 불합격시의 처리」

- 10.1 "을"은 준공기일 내에 종합 성능검사 및 법정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18 조에 의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10.2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불합격 시에는 법정 기준 및 "갑"이 요구하는 성능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금」

- 11.1 "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 수령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2 본 계약이 제 22.1 항 또는 제 22.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손해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된다.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은 "을"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갑"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을"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에 추가하여 그 초과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11.3 계약이행 보증금은 본 시운전 완료 후 반환한다. 단, "을"의 채무가 있을 시 채무와 상계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 11.4 "을"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은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여부를 불문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보증금」

- 12.1 "을"은 물품의 하자보수를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갑"에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2.2 "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 년간으로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유상으로 보수한다.
- 12.3 "갑"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을"이 불응할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갑"은 제 3 자에게 시공 또는 납품시킬 수 있으며 공사대금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시에는 "을"이 하자보증금에 추가하여 그 초과 공사대금도 별도로 지불한다.
- 12.4 "을"은 "갑"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보수대책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파견 및 대체품의 제공 등 최선의 방법으로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12.5 "갑"은 필요 시 "을"과 합동으로 계약물품의 성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요구 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기술지도 원을 파견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유지보수 계약」

13.1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유지보수계약에 의한다.

13.2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 "갑"의 책임으로 유지보수를 행할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부품을 유상으로 10년 이상 공급한다.

제 14 조 「표지」

14.1 "을"은 물품의 식별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개의 물품포장 외부 또는 몸체(포장하지 않은 물품)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 1) 고유번호 또는 부호
- 2) "갑"이 정하는 설비식별부호
- 3) 품명 및 단위
- 4) 용적 및 중량
- 5) 취급상 주의사항
- 6) 제작자 및 공급자명
- 7) 발주자명
- 8) 포장 및 검사일자
- 9) 계약번호

14.2 전항의 표지는 포장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4.3 포장도 할 수 없고 몸체 표시도 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항의 내용이 명기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제 15 조 「보존 조치」

"을"은 계약물품에 따라 수송, 저장 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습 및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16.1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6.2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대금지불」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다.

17.1 선금금 (총계약금의 20%): 계약 후 40일내 지급. 단, 은행대출 승인 완료 후 지급조건으로 한다.

17.2 중도금 1 차 (총계약금의 35%): S/C(Stacker Crane)입고 후 30 일 이내 지급

17.3 중도금 2 차 (총계약금의 35%): 기계설비 설치 완료 후 30 일 이내 지급

17.4 잔 금 (총계약금의 10%): 시운전 성공 및 S/W 검수 완료 후 30 일 이내 지급

17.5 계약금액 총 일금이백이십이억원은 계약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며, 만약 계약내역서 중 "갑"이 일부 자재를 "갑"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갑"의 구매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지체상금」

18.1 "을"은 준공기일 내에 종합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일수 기준 지체일수 1 일당 계약금액의 1.0/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최대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18.2 "을"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갑"이 인정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8.3 계약이행보증금의 보증 범위 속에 지체사상금도 포함된다.

제 19 조 「계약기간의 변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갑"과 "을"의 상호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9.1 "을"의 제출자료에 대한 "갑"의 승인지연으로 전체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19.2 "갑"의 관련 공정의 작업지연으로 인하여 "을"의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19.3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작업이 지연된 경우.

제 20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보장」

20.1 "을"은 계약이행 중 "갑"으로부터 습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 "을"은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업자 등으로 하여금 본 조의 비밀보장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본 조의 약정은 본 계약이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0.4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갑"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1 조 「추가 설비 및 공사」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설비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공사 실행승인 및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를 실시한다.

제 22 조 「계약해지」

22.1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 통고할 수 있고, "을"이 서면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2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있어서의 "을"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이러한 사정을 "갑"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갑"이 서면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3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이 시공한 부분이 "갑"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그 기성고에 상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단, 본 조 제 2 항 또는 "갑"에게 책임이 있는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3 조 「현장 대리인」

23.1 "을"은 공사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2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23.3 "갑"은 23.1 항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이 신체의 허약,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4 조 「제규정 준수」

"을"은 "갑"이 제정하여 시행 중인 사규 중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반규정 (보안규정, 공사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법정검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안전관리」

25.1 "을"은 공사현장 주변을 항시 정리하여 시공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2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25.3 "을"이 작업장 정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잔여품을 수집,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갑"은 "을"의 비용 부담으로 제 3자에게 정리작업을 시킬 수 있다.

25.4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갑"에게 끼친 손해 (인명, 건물, 기기, 피해 등)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5.5 "을"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공사작업장 및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갑"의 교육, 감독, 지시이행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6 조 「보험 및 면책과 책임」

26.1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보험을 각자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6.2 "갑"또는 "을"은 상대방의 종업원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부상이나 제 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법령의 준수」

27.1 "갑"과 "을"은 본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안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27.2 "을"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 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안전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계약 해석」

본 계약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29 조 「소송 관할」

29.1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행위는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 1 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9.2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9.3 본 계약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갑"과 "을"은 상호간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